

#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리스 규정을 중심으로\*

심태섭(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tsshim@uos.ac.kr*)  
배수진(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sjpae@cau.ac.kr*)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종전 규정중심의 기준은 특정 회계처리 기준을 숫자로 제시하거나 세부항목을 명확하게 열거하였다. 이에 반해 원칙중심의 기준은 해당 기준의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나 지침 등의 구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의 범위 내에서 회계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정중심의 기준과 현재 IFRS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기준이 이를 적용하는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규제기관의 감리가능성 확대가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실험참여자는 리스분류와 관련된 가상의 감사상황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처리변수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으로 설계(2\*2, 집단간 요인)되었다. 회계원칙 규정방식 중 원칙중심기준으로 리스에 대한 K-IFRS규정을 그리고 규정중심기준으로 리스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감사인의 리스분류의사결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는 현재 4대 대형회계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다. 자료분석결과, 명확한 규정중심의 기준 보다 불명확한 원칙중심의 기준에서 감사인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의 의사결정(공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때 이러한 의사결정성향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원칙중심 하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하에서 감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FRS 기준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참여자간 응답의 일치정도(consensus)를 검토한 결과, 원칙중심의 기준하에서 감사인들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 하에서는 애매한 기준의 내용을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 하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중심, 규정중심, 감리가능성, 의사결정

## 1. 서론

최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의 도입 이후 재무회계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변화된 회계기준이 갖는 가장 핵

논문접수일: 2012. 4                      게재확정일: 2012. 10

\* 본 논문은 2011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동계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우용상 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과 본 논문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심적인 특징은 기존의 회계기준이 규정중심(rules-based)인데 반해,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라는데 있다. 즉, IFRS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틀 내에서 재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원칙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작성자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IFRS는 양적 판단의 기준 보다는 질적 판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규정중심의 경우에 비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규정중심의 기준은 회계처리의 선택시 원칙중심의 기준에 비해 보다 명확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은 기준 내에서 표현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특정한 회계선택을 적용하기 위한 한계수준(thresholds, 회계적 사건이 발생될 확률적 판단수준을 포함)에 대해 규정중심의 기준은 세부항목을 열거하거나 일정한 수치(numeric)로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원칙중심의 기준은 최소한의 사례나 지침을 통해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거나 구술적(verbal)으로 서술함으로써 보다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가 특정 회계처리를 선택하는데 적용하는 판단기준은 각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별(경영자 및 감사인 등)로 차이가 있으므로, 앞에 언급한 회계원칙 규정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자별로 최종 선택하는 회계처리 선택방법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덜

상세한(구술적) 접근이나 상세한(수치적) 접근방식의 차이는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회계원칙 규정방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경영자, CFO 등)의 회계보고성향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는 원칙중심(규정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공격적 의사결정"이라 함<sup>2)</sup>)을 감소(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Maines 2007; Nelson et al. 2002; Mergenthaler 2009; Agoglia et al. 2011; Psaros and Trotman 2004), 그 반대의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Hackenbrack and Nelson 1996). 이와 같이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재무보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기준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이므로 이러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원칙중심의 기준이 재무보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FASB 2002), 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현 시점에서 회계기준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IFRS와 같은 복잡한 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이 특별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 1)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심리학 분야의 연구로 Budescu and Wallsten (1985), Olson and Budescu (1997), Zimmer (1983, 1984), Moxey and Sanford (2000), Teigen and Brun (1995, 1999, 2000), Budescu et al. (1988), Wallsten (1990) 등이 있다.
- 2) 회계담당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감사인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는 성향을 "공격적 의사결정(혹은 회계처리)"라고 표현하고 있기에(Cuccia et al. 199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있고(Schipper 2003),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회계처리 선택권의 확대가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회계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SEC 2003).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는 IFRS하에서 재무정보 공시의 충실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sup>3)</sup> 이와 같은 감독기관의 감리 확대는 IFRS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한 회계환경 하에서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가 기업의 재무적인 실질을 보다 충실히 보고하도록 유도하는데 감독기관의 감독강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기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IFRS와 관련하여 내부규제(감사위원회)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재무제표작성자의 공격적 보고성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Agoglia et al. 2011), 감독기관의 감독강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sup>4)</sup> 특히, 최근과 같이 회계기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감리확대가 기업의 정확한 재무보고와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때 감사인의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처리변수)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

정자인 감사인의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방식이 다른 두 개의 회계기준이 있다. 즉 사례나 지침에 의한 정의를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칙중심 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숫자나 세부항목을 열거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중심의 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규정방식의 회계기준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IFRS가 도입이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회계감독기관이 그 감독기능의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실제 회계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회계상황에서 감사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행태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실험대상자는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4대 대형회계법인(Big 4)<sup>5)</sup>

3)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작성자가 기한 내에 IFRS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을 공표한 바 있다.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 정착기(2~3년) 동안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감독부서 전직원을 투입하여 2011년 1분기 보고서를 일체 점검하는 등 IFRS의 성공적 정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하였다(금융감독원 2011).

4) 감독기관의 감리확대에 대하여 이재은(2011)과 정태범(2008) 등의 연구가 있으나, 각각 품질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측면과 감리에 따른 사후 조치를 파악한 바 있다.

5) 이는 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업무를 제휴한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삼일, 삼정, 영화, 안진회계법인이서 근무하는 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다. 실험참여자는 리스규정과 관련된 가상의 감사상황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처리변수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이다. 특히 회계원칙 규정방식중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리스에 대한 K-IFRS를, 그리고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리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sup>6)</sup> 처리변수는 모두 집단간 요인으로 설계되었고, 실험집단은 총 4집단(2\*2)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는 감사인이 결정하는 리스분류의사결정으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실험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정중심에 비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감사인들은 더 공격적인 회계보고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숫자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규정중심) 보다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원칙중심)에는 감사인의 공격적 보고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규정중심에 비해 세부적인 지침없이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원칙중심의 기준은 경영자 등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이 이를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선택을 할 유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최근 IFRS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회계기준제정의 방향은 원칙중심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FRS 기준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참여자간 응답의 일치정도(consensus)를 검토한 결과,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사인들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감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 하에서는 애매한 기준의 내용을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하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IFRS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감리가능성은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 감사인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이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을 정리하였다. 제IV장에서는 자료분석 결과와 연구결과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6) 실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중 K-IFRS와 동일한 방식인 원칙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사인 리스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규정중심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표현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과 가설의 설정

### 2.1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

최근 IFRS의 도입은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선택적 회계처리의 적용과 보고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두 가지(①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의미와 판단, ②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재무보고성향의 관련성)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 주제는 회계기준에서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규정방식이 갖는 의미·특성과 각 기준에 대하여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최근 회계기준의 변화와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Hail et al. 2010; SEC 2003).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규정중심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학계 및 감독기관의 검토와 해석은 규정중심이 “(1) 명확한 한계수준(bright-line

thresholds), (2) 적용범위와 기간의 예외(scope and legacy exceptions), (3) 광범위한 이행지침(large volumes of implementation guidance), (4)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a high level of detail)”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FASB 2002, 2004; Nelson 2003; Schipper 2003; SEC 2003).<sup>7)</sup> 이와 같은 특성들은 규정중심의 기준을 원칙중심의 기준 보다 상세하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Nelson 2003),<sup>8)</sup>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표면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된다. 즉, 실제 회계기준에서 표현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정한 회계선택을 적용하기 위한 한계수준(확률적 판단수준도 포함하여)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규정중심의 기준은 해당되는 한계수준의 각 항목을 열거하거나 일정한 수치(numeric)로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한계선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원칙중심의 기준은 사례나 지침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거나 구술적인 표현(verbal)으로 서술함으로써 보다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확률적인 판단수준에 대해, 규정중심 기준에서는 ‘80% 라는 수치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는 데 비해, 원칙중심의 기준에서는 ‘상당히(very likely) 라는 구술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sup>9)</sup>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구술적인 접근방식(즉 원칙중심 기준)이 숫자에 의한 접근방식(즉 규정중심 기준)에 비해 개개인에게 더 쉽고 자연스러울

7) SEC(2003, p.23)은 규정중심 기준의 주된 특성이 상세한 이행지침을 유도하게 하는 예외와 명확성임을 제시하였다.

8) 유사한 관점으로, Schipper(2003, p.67)는 회계기준은 재무보고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으로부터의 편차를 허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원칙 내에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예외적인 항목(범위상의 예외) 혹은 특정 처리(처리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이 복합된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는 기준의 길이와 복잡성이 추가되며, 예외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9) 이 밖의 표현상 차이에 대한 실례로, 연구개발비 관련 기준에서는 보다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SFAS 2에서는 비용에 대한 항목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IAS 9(FRS-13)에서는 사례와 지침에 의한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Bruce et al. 2006)

수 있으며(Budescu and Wallsten 1985; Olson and Budescu 1997; Zimmer 1983, 1984), 추가적인 비수치상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고, 차별적인 구절은 동일한 수치의 확률을 전달하거나, 더 혹은 덜 설득력이 있거나 다른 강조점을 전달할 수도 있음(Moxey and Sanford 2000; Teigen and Brun 1995, 1999, 2000)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확률에 대해 제시된 서술적 문구는, 수치로 제시된 경우에 비해, 보다 더 모호할 수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Budescu et al. 1988; Wallsten 1990). 한편, Bruce et al. (2006)은 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기준의 차이가 갖는 통계적 의미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원칙중심 기준은 규정중심의 기준에 비해, 거래수준과 재무보고수준에 있어 보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기준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한계수준 혹은 확률적 평가에 대한 표현방식의 차이는 특정한 회계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회계기준을 이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회계처리 상황에 대한 규정방식이 다른 두 가지 회계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중심의 회계원칙(리스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회계원칙(리스의 경우는 K-IFRS)이 의사결정자의 회계상황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주제는 기준상의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재무제표작성자 혹은 CFO 등)의 재무보고성향(즉, 충실하게 보고 하는가 혹은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등을 하는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까지 특정방식이 공격적인 재무보고성향을 확대 혹은 축소시킬 수 있다는 논의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Mergenthaler 2009).

우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에서 원칙중심(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 공격적 보고를 감소(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Maines(2007)는 한계수준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격적인 보고를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Nelson et al.(2002)은 상세한 지침이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작성자들은 공격적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최고경영자가 기준이 명확할 때는 정형화된(structured) 거래를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때에는 비정형화된(unstructured) 거래를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Mergenthaler(2009)는 기준이 규정중심의 특징을 포함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치를 개발(Rule-Based Continuum, RBC)<sup>10)</sup>하고, 규정중심의 특성과 이익조정 간에 정(+ )의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sup>11)</sup> 또한 Psaros and Trotman

10) RBC(rule-based continuum) 점수는 기준이 규정중심의 특성을 포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이 특성에는 기존 연구(Shipper 2003; Nelson 2003)에서 규정중심이 갖는 특성으로 주로 제시되어 온 4가지 특성: (1) 명확한 한계수준(bright-line thresholds), (2) 적용범위와 기간의 예외(scope and legacy exceptions), (3) 광범위한 이행지침(large volumes of implementation guidance), (4)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a high level of detail)이 포함된다. RBC 점수는 기준이 제시된 각 특성을 포함하면 1점씩 증가하여, 0점(기준이 모든 특성을 불포함)에서 4점(기준이 모든 특성을 포함)의 범위를 갖는다.

11) 연구자들은 규정중심의 기준이 위배되었을 때(violated) 이익조정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규정중심의 기준을 위배하였을 때, 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004)은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특정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공격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수준을 포함하지 않았던 첫 번째 실험에서 기준의 명확성 수준이 보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효과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실험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의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간의 결과비교를 통해, 규정중심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sup>12)</sup> 한편, Agoglia et al.(2011)은 미국의 리스규정을 이용하여 명확한 기준 혹은 덜 명확한 기준의 차이가 재무제표작성자의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참여자들은 명확한 리스 분류기준(규정중심)이 제시된 경우에 비해, 덜 명확한 리스분류기준(원칙중심)이 제시될 때 보다 덜 공격적인 보고성향을 나타냈다. 이에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궁극적으로 충실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규정중심(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공격적 보고를 축소(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ackenbrack and Nelson(1996)은 감사인은 자신의 유인(incentive)과 일치하는 의사결정의 보고를 승인하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애매함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ASB(2002, 9)도 원칙중심의 접근이 “오용(abuse)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계기준에서 원칙은 기준의 의도와 정신에 일치하는 선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명확한 규정중심의 기준이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보고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연구자들은 원칙중심의 기준체제가 재무보고를 보다 의미 있게 하든지 혹은 덜 명확한 지침을 오용하도록 유도하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제시한다.<sup>13)</sup>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원칙중심의 기준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처리가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는 IFRS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의 회계보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숫자나 열거된 항목을 통해 명시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인 규정중심의 기준 하에서의 회계관련 의사결정과, 사례나 지침에 의한 정의를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의 회계관련 의사결정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관련된 회계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이며, 선행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감사인의 의사결정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12) Psaros and Trotman(2004)은 추가연구로 차별적인 명확성 기준이 재무제표작성자들의 보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제안하였다.  
13) Jamal and Tan(2010)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회계기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경영자의 회계보고 선택은 감사인의 유형(원칙지향, 규정지향 혹은 고객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가설 1: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4)</sup>

## 2.2 감리가능성

회계환경은 많은 기준과 규제(standards and regul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기준과 규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규제당국이나 규정제정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Bonner 2008, p.251). 회계관련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과 규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IFRS가 도입되면서 규제나 관리·감독이 회계 관련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기구는 대표적으로 기업의 내부감독기구 및 외부감독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관리·감독 등은 경영자로 하여금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적발위험의 불확실성과 처벌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goglia et al.(2011)은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기업내부감독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재무보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sup>15)</sup> 규정중심의 제도 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sup>16)</sup>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 덜 공격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sup>17)</sup>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회계관련 규제와 연결하여 소송위험과 회계원칙 규정방식 그리고 감사인의 의사결정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존연구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의견이 제시하는 상황에서, Donelson et al.(2010)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 낮은 소송발생률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Kadous and Mercer(2011)은 IFRS하에서 회계기준의 불명확성이 증가할 때 감사인의 법적무가 증가되도록 유도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불명확한 기준(IFRS)일 때 감사인이 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산업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감사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sup>18)</sup> 그러나 감사인이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감

- 
- 14)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현상의 예측방향을 포함하지 않는 양측검정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 15) 현재 IFRS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감사위원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최근에 설치해서 미국의 감사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칙중심 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강도와 공격적 재무보고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직접적 증거는 없으며, 존재나 강도와 관련하여 간접적 증거는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Collier and Gregory 1996; Peasnell et al. 2000; Chen and Cheng 2007).
  - 16)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은 본문에서 감사위원회 강도(audit committee strength)로 표현하였고,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수준을 나타내는 기업 내부의 상황변수로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재무관련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설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을 나타내는 감사위원회의 특성(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감사위원회 강도)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높은 경우는 감사위원은 기업과 특정 관계가 없으며(독립성),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전문성), 감사위원회의 빈도가 높은 상황(활동성)으로 설계하였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낮은 기업의 경우는 기업과 관계가 없는 감사위원은 한명(두 명은 해당기업의 과거 임원임)이며(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 한 명의 재무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낮은 전문성), 감사위원회의 빈도가 낮은 상황(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성)으로 설계하였다.
  - 17) 원칙중심 제도 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공격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 18) 그러나 덜 공격적인 의사결정이 산업표준과 다르면 IFRS 하에서는 감사인이 증가된 법적위험을 예측하고 피함으로써 이러한 (감사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제거됨을 제시하였다.

사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불명확한 기준이 감사인에게 미칠 이러한 상반된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신중히 하여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IFRS 정착기(2-3년) 동안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감독부서 전직원을 투입하여 2011년 1분기 보고서를 일제 점검하는 등 IFRS의 성공적 정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IFRS 도입 이후 최근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확대 등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 확대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감사인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은 감소할 것이다.

### 2.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과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은 vs. 낮은)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리스규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차별적인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Agoglia et al. 2011; Jamal and Tan 2010; Mergenthaler 2009; Donelson et al. 2010),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실험상에서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이다. Agoglia et al.(2011)과 Jamal and Tan(2010) 역시 본 연구와 같이 리스규정을 실험상에 이용하였으나, Agoglia et al.(2011)은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는 기준(SFAS No. 13)과 현재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IAS 17)을 실험상에 반영하였다. 또한 Jamal and Tan(2010)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SFAS No. 13, IAS 17)과 현재 도입을 준비중이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은 기준을 반영하여 이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되어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험대상인 실험참여자의 차이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재무제표작성자(CFO)를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Agoglia et al. 2011; Jamal and Tan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차별적인 규정방식의 제시 혹은 감리가능성이 재무제표작성자가 아닌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만을 실험참여자로 한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응답자의 평균만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간의 판단의 일치정도(consensus, 판단일치정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판단일치정도는 의사결정연구에서 정확성(accuracy)과 함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품질측정치로서 인식되고 있다(Booner 2008, p.42).<sup>19)</sup> 따라서 결과의 해석 시 실험상황에서 실험참여자들의 판단일치정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 판단일치정도는 응답자간의 응답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응답의 분포의 모양이나 표준편차 등으로 알 수 있다. 판단일치 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IV.4. 판단일치정도(consensus)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품질>에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두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실험상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재무제표작성자가 아닌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회계기준제정기관에게 보다 효과적인 회계원칙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감독당국에게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3.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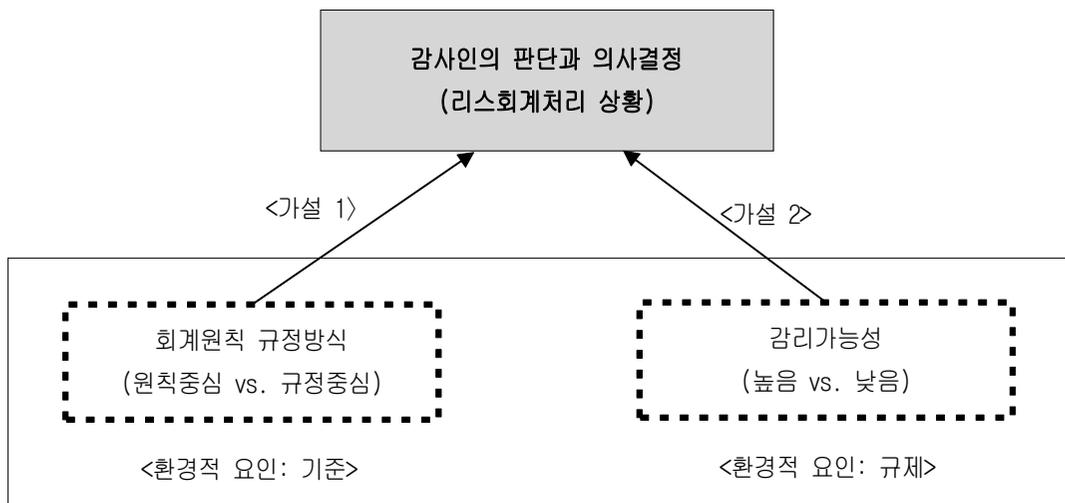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원칙의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자 하며, 분석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는 두 개의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s: 회계원칙의 규정방식 및 감리가능성)가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회계원칙의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은 Roberts(1998)가 제시한 회계관련 의사결정상황에서 감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에 속하며, Bonner(2008)가 정의한 규정(standards)과 규제(regulations)에 해당하는 변수이다.

#### 3.2 실험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subjects)는 가상의 회계감사상황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상황에 관한 판단



<그림 1> 연구모형

및 의사결정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참여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실제로 회계감사상황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정기간 이상의 회계감사 경험을 보유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회계법인이나 개인사무소에 소속된 회계사와 Big 4에 소속된 회계사의 판단과 의사결정행태는 소속된 조직의 규모에 따른 고객(피감사기업)과의 관계 혹은 조직 고유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sup>20)</sup>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감사상황을 현실의 감사상황처럼 적용하여 인식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판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Big 4에 재직 중이며 최소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급이나 연령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급과 연령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였다.

### 3.3 실험설계

#### 3.3.1 개요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두 개의 처리변수(회계원칙규정 및 감리가능성)를 집단간 요인(between-subjects factors)으로 조작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실험<sup>21)</sup>을 설계하였다.

<표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2\*2, G11, G12, G21, G22)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참여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험과업은 리스와 관련된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sup>22)</sup> 본 연구에서 리스규정을 회계상황의 조작에 이용한 이유는 Donelson et al.(2010)이 리스기준을 회계원칙 규정방식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반영하는 규정으로 제시한 것에 기초하였다. 즉, 리스에 대한 현행 미국 규정(SFAS No. 13,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은 Mergenthaler(2009)에 의하여 측정된 RBC점수<sup>23)</sup>가 4로 전형적인 규정

<표 1> 실험설계

회계원칙 규정방식 \ 감리가능성	높음	낮음
원칙중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G11	G21
규정중심(일반기업회계기준)	G12	G22

20) 선행연구에서는 고객(피감사기업)과의 관계(McGill 1990; Reckers et al. 1991)나 조직(회계사)에 대한 감사(관리 정도)등(McGill 1990)에 의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감사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1) 본 연구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관계된 변인을 가능한 통제하여 이루어지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넓은 의미의 실험설계에 포함되므로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2)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Agoglia et al. (2011)의 실험설계를 수정한 것이다.

23) RBC(rule-based continuum) 점수에 대한 설명은 <주석 10>를 참고하시오.

중심의 기준인데 비하여, IFRS(IAS 17, 우리나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일)는 RBC 점수가 2로, Donelson et al.(2010)이 검토한 20개 기준 중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규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스분류사례를 이용하여 원칙중심과 규정중심 기준 간의 차이를 실험상에 반영하였다.

### 3.3.2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설문지는 다음 <표 2>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속성을 측정하는 단계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위험선호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는 본 실험절차로 실험참여자가 감사인임을 가정 한 후, 피감사기업인 (주)A에서 발생한 리스회계처리와 관련된 가상적 감사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는 세부적으로 세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section 1]에서는 리스자산의

분류기준이 각 실험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방식의 회계기준으로 제시된다.<sup>24)</sup> [section 2]에서는 (주)A가 리스계약을 통해 기계장치의 취득한 상황과 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리스자산 취득에 대한 두 가지의 회계처리 결정(운용리스로 분류 혹은 금융리스로 분류)이 (주)A의 재무상태 및 재무비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 피감사기업인 (주)A(고객)와 감사인(실험참여자)이 속한 회계법인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추가로 감사보고서의 감리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피감사기업인 (주)A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ection 3]에서는 제시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A의 감사인으로서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설문문이 끝나면, 마지막 <3단계>에서 처리변수의 적절성 평가(manipulation check)를 위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적절성 평가는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실험질문에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sup>25)</sup>

<표 2> 실험절차

<1단계>	실험참여자의 속성의 측정 인구통계적 특성 및 위험선호태도의 측정
<2단계>	본 실험절차 [section 1] 가상기업의 감사인으로서의 가정과 리스자산 분류기준의 제시 [section 2] 가상기업의 기계장치의 취득(리스계약) 및 기타상황 [section 3] 리스분류 의사결정
<3단계>	처리변수의 적절성 평가

24) 집단별 조작상황은 <4> 변수의 측정)을 참고하십시오.

25) 처리변수의 적절성평가는 실험참여자가 실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참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절차이며,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감리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실제 참여한 실험상황과 응답자의 응답이 일치하는 가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본 실험에서는

### 3.3.3 실험과업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감사인)는 가상적 실험상황에서 회계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실험상황은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연결하여 (주)A가 리스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이며, 5년 동안 최소불능한 상황임을 설정하였다. 또한 리스계약은 해당 자산의 최초의 해지불능기간 말(5년도 말)에 일정비율로 월별 리스료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option을 포함하지만, 이 option을 행사할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option을 행사하면(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총 경제적 내용연수 10년 중 리스기간이 8년이 된다. 따라서 option의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험참여자(감사인)들이 리스기간을 기준으로 운용리스 혹은 금융리스로 분류하게 된다.<sup>26)</sup> 본 연구에서 가상한 리스계약의 경우, 만일 리스계약기간을 갱신한다면 리스기간이 8년이 되어 규정중심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7.5년을 초과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갱신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고객의 요구 등 여러 변수가 감사인의 최종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원칙중심인 K-IFRS하에서 리스자산 분류는 보다 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계약의 갱신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실한 리스기간이 5년이며, 만일 갱신한다 하더라도 앞의 종전기준에 비추어 그 초과하는 기간(불과 0.5년)이 길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없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는 이 리스자산에 대한 분류는 감사인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리스자산을 분류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관심변수인 회계기준 규정방식과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최종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을 수행하기 전,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 내 가상적 감사상황 및 실험과업의 현실적인 타당성 그리고 지문의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실험(pilot test)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과 근접한 감사상황을 실험환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3.3.4 변수의 측정<sup>27)</sup>

(1) 처리변수: 회계원칙 규정방식 및 감리가능성

#### ①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vs. 규정중심

본 실험에서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을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조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회계처리기준(K-GAAP)에서의 리스관련 회계원

실험참여자(감사인)들이 실험에 보다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실험참여자들에게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이 실제 사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응답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부록)의 설문지 참고).

26) 이외의 다른 조건은 금융리스분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리스분류의사결정이 리스기간 기준에 한정되도록 실험상황을 조작하였다.

27) 자세한 실제실험상황과 조작변수별 제시문구는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하시오.

칙 규정방식을 실험에 반영하였다. 즉 리스에 대한 원칙중심의 규정으로 K-IFRS 제1017호를, 리스에 대한 규정중심의 규정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스분류에 대한 기준(금융리스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두 규정의 차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리스기준에서 구체적인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이라는 문구이다.<sup>28)</sup> 우선, 본 실험에서는 ‘원칙중심 기준’으로 조작되는 집단의 경우(G11, G21)에는 리스에 대한 K-IFRS 제1017호 문단 10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단 10의 (3)인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지침이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의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조작되는 집단(G12, G22)의 경우에는 리스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3.6에 해당하는 문구를 제시하고(이 문구는 앞의 K-IFRS 제1017호 문단 10과 동일함), 이와 동시에 문구에 대한 실무지침규정(13.6 및 13.7)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실무지침 13.6) 위의 (3)의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지침이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의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조작되는 집단(G12, G22)의 경우에는 리스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3.6에 해당하는 문구를 제시하고(이 문구는 앞의 K-IFRS 제1017호 문단 10과 동일함), 이와 동시에 문구에 대한 실무지침규정(13.6 및 13.7)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실무지침 13.6) 위의 (3)의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표 3> 원칙중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규정중심(일반회계처리기준)에서의 리스관련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 리스분류기준(금융리스 분류기준) 중

처리변수 (회계원칙 규정방식)	리스관련 규정	조작	
		공통규정	실무지침
원칙중심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K-IFRS 제1017호 문단 10 중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b>않을</b> <b>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b> <b>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b>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 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실무지침 없음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 기준)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13장 문단 13.6 중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b>않을</b> <b>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b> <b>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b>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 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 문 단 13.6(3)의 경우에 해당한다”(실무지침 13.6)과 (4)와 관련하여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100 분의 90 이상이면 문단 13.6(4)의 경우 에 해당한다.”(실무지침13.7)로 규정

28) 물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라는 문구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리스기간”에 국한하기에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또한 현재 K-IFRS는 상장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중심'을 가정한 집단(G11, G21)은 상장기업을 가정하였으며, '규정중심'을 가정한 집단(G12, G22)은 비상장법인으로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규정과 관련하여, '원칙중심'을 가정한 집단(G11, G21)은 (주)A를 상장기업으로 가정하고, 준거하여야 할 회계기준으로 '원칙중심'인 'K-IFRS 제1017호 문단 10'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규정중심'을 가정한 집단(G12, G22)은 (주)A를 비상장법인으로 가정하고, 준거하여야 할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실험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

## ② 감리가능성: 높음 vs. 낮음

감리가능성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감리가능성이 높은 집단(G11, G12)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추후 2~3년 동안 품질관리감리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sup>29)</sup> (주)A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감리가 실시된 적이 없고, 유사업종의 기업에서 분식회계 문제가 지적되어 감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리스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 점검 대상임이 공시된 바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감리가능성이 낮은 집단(G21, G22)의 경우에는 최근 (주)A가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큰 지적사항이 없어서, 현재 감리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 (2) 종속변수: 리스분류 의사결정

본 논문은 제시된 처리변수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에서 (주)A의 감사인으로서 리스거래에 대한 판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금융리스로 확실히 처리(주)A에 불리하게)하면 1, 운용리스로 확실히 처리(주)A에 유리하게)하면 11). 추가로 이러한 선택이 감사의견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가정하였다.

## (3) 통제변수

처리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는 모든 실험집단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여, 이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 ① 피감사기업(고객)의 재무상황과 감사인의 의사결정(리스분류 의사결정)이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피감사기업이 처한 상황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sup>30)</sup> 이에 본 연구는 감사인의 두 가지 리스분류 의사결정에 따라 (주)A의 당기 말(리스계약이 속한 첫 해)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실험집단에 동일한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A의 해당 자산을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적자보고(당기순손실)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이익관련 재무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제시하였다.<sup>31)</sup> 또한 "(주)A는 현재 금융기

29) 실제로 K-IFRS 도입 이후, 금감원이 IFRS 정착기 동안 재무제표에 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공표한 것을 실험상황에 반영하였다(금융감독원 2007 "IFRS 재무정보 공시 충실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 정례 브리핑 자료).

30) Roberts(1998)는 세부관련 상황에서 고객의 수익이나 운영성과가 감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1) 이러한 두 가지의 리스분류의사결정(운용리스 혹은 금융리스)이 (주)A의 재무상태 및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4〉 실험실시현황

회계원칙 규정방식	감리 가능성	실험 집단	참여	부적합한 실험참여자 및 응답누락 <sup>주1)</sup>	적절성 평가 <sup>주2)</sup>	유효수
원칙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높음	G11	50	(-)3	(-)9	38
	낮음	G21	50	(-)1	(-)13	36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	높음	G12	53	(-)4	(-)10	39
	낮음	G22	51	(-)1	(-)17	33
계		4집단	204	(-)9	(-)49	146

주1) 감사경력이 3년 미만인 실험참여자(8명)와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1명)를 분석대상에서 제거함.

주2)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통해 오답을 응답한 모든 실험참여자를 분석대상에서 제거함.

관 차입금이 있고 향후 5년 동안 이 차입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주요 재무비율이 현재보다 악화되면 차입금 상황압력이 예상됨”을 가정하였다.<sup>32)</sup> 즉 본 실험에서는 해당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의사결정이 (주)A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가정하였다.

### ② 피감사기업(고객)의 중요성

선행연구에서 감사인에게 고객의 중요성은 감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McGill 1990; Reckers et al.

1991).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감사인이 (주)A와 관련된 5개 회사를 감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고객으로 가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였다.<sup>33)</sup>

### ③ 피감사기업(고객)의 요구

Roberts(1998)는 고객의 선호(요구)가 회계관련 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특정 회계처리에 대해 피감사기업이 요구하는 상황임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리스계약 건에 대해 감사인은 (주)A가 3년의 추가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	268,430,807 원	-88,658,694 원
EPS	14.78 원	-4.88 원
ROA	0.21%	-0.07%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88.44%	92.34%

32) 이와 같이 피감사기업이 재무적으로 곤경한 상황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회계처리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감사인이 동일하게 처한 피감사기업의 (재무적 곤경)상황에서, 특정한 처리변수(회계원칙 규정방식, 감리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사인의 판단성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없다. 단, 이러한 재무적 곤경 상황의 차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응답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33) 이는 (주)A의 관계회사 총 5개를 포함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실험참여자)에게 중요한 고객임을 가정하기 위한 문구이며, 경우에 따라 감사인(실험참여자)이 피감사기업을 중요하지 않은 고객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에 중요한 고객임을 실험설문지에 명시하였다.

34) 즉, 이 경우 5년 말에 갹신할 경우 리스기간이 총 8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의 10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사인은 리스기간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리스로 판단하는 상황임을 가정하였다.

갱신 option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만,<sup>34)</sup> (주)A의 회계담당자가 행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A는 이번 리스 처리가 금융리스로 처리되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차기 이후의 감사계약이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IV. 자료분석

### 4.1 실험실시현황 및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지는 Big 4에 각각 60부씩 배포(총 240부)되어 총 2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5%). 회수된 설문지 중 감사경력 3년 미만인 응답자와 실

험질문에 대해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를 제외하였다. 추가로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평가 문항에서 오답을 응답한 실험참여자를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146매(유효율: 71.57%)였다. 이상의 실험실시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다음의 <표 5>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에 응답한 실험참여자는 남성(N=106, 72.60%)이 여성(N=40, 27.40%)에 비해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연령은 30세에서 39세까지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경력은 5년 미만(3년 미만은 제거), 5-9년 그리고 10년 이상을 보유한 실험참여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실험참여자들의 감사경험의 차이로 인한 편의(bias)는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sup>35)</sup>

<표 5>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 (명)	비율 (%)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06	72.60	연령	30세 미만	20	13.70
	여성	40	27.40		30-39세	108	73.97
소속 회계 법인	삼일	50	34.25		40-49세	17	11.64
	삼정	33	22.60	감사 경력	5년 미만	47	32.19
	한영	38	26.03		5-9년	52	35.62
	안건	25	17.12		10년 이상	47	32.19

주) 설문항목상 누락된 응답은 통계량 계산에서 제거함.

35) 이밖에 분석에 이용된 실험참여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는 Young(1985)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참여자가 복권을 사는 상황을 가정하여, 당첨되면 10,0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0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몇 %이상이면 이 복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 때 실험참여자가 응답한 당첨확률이 50% 미만이면 위험추구형, 50%면 위험중립형 그리고 50% 초과면 위험회피형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위험회피형은 53.43%(N=78), 위험중립형은 37.67%(N=55), 위험추구형은 8.90%(N=1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위험회피형에 속하는 실험참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4.2 예비분석

본 절에서는 가설검정에 앞서 각 실험집단에서 실험참여자(감사인)의 응답(리스분류의사결정)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을 제시한다.

### 4.2.1 기술통계량

〈표 6〉에서는 각 실험집단의 응답(리스분류의사결정)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집단별로 조작된 처리변수(회계원칙 규정방식, 감리가능성)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은 집단별로 리스분류의사결정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인 규정중심(mean=4.88)일 때 보다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기준인 원칙중심(mean=5.26)일 때,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피감사기업((주)A)에 유리한 결정)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참여자들은 원칙중심의 회계원칙 규정방식에서 보다 피감사기업

(주)A)에 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여, 공격적인 의사결정행태가 보고되었다. 또한, 감리가능성이 높은 집단(mean=4.94)에 비해 낮은 집단(mean=5.22)에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리가능성이 낮을 때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 4.2.2 예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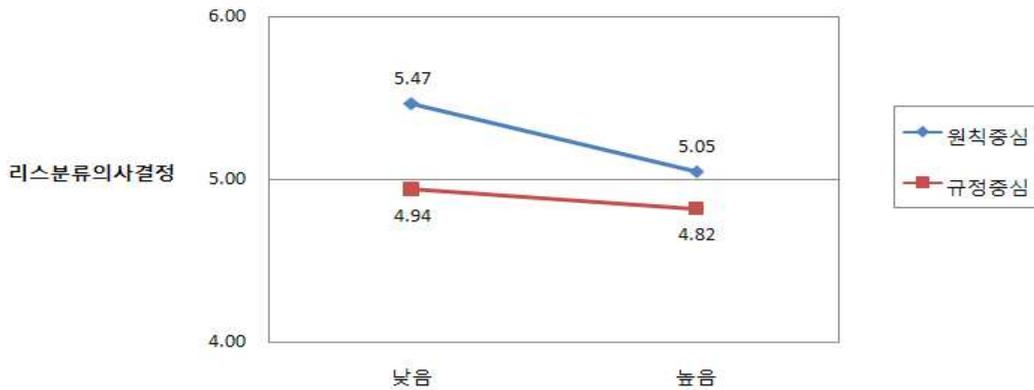
다음 〈그림 2〉는 〈표 6〉의 기술통계량 결과에서 제시한 집단별 응답성향의 차이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규정중심에 비해 원칙중심일 때,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회사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 원칙중심(mean=5.05)이나 규정중심(mean=4.82)에서의 실험참여자의 의사결정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회사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규

〈표 6〉 기술통계량

감리가능성	높음				낮음				계			
	구분	집단	유효수 (N)	평균 <sup>주)</sup> (Mean)	표준 편차 (Std. Deviation)	집단	유효수 (N)	평균 <sup>주)</sup> (Mean)	표준 편차 (Std. Deviation)	유효수 (N)	평균 <sup>주)</sup> (Mean)	표준 편차 (Std. Deviation)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G11	38	5.05	3.093	G21	36	5.47	2.903	74	5.26	2.989
규정중심 (일반 기업회계기준)		G12	39	4.82	2.818	G22	33	4.94	2.947	72	4.88	2.858
계			77	4.94	2.939		69	5.22	2.915	146	5.07	2.921

주) 리스분류의사결정 (1 = "금융리스로 처리"(주)A에 불리)이며, 11 = "운용리스로 처리"(주)A에 유리)에 대한 평균값.



주) 그래프의 값은 각 집단별 리스분류의사결정의 평균값을 이용(1= "금융리스로 처리"(㉠A에 불리)이며, 11= "운용리스로 처리"(㉠A에 유리)).

〈그림 2〉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의 효과

정중심 mean=4.94, 원칙중심 mean=5.47).

#### 4.3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회계원칙 규정방식 및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정을 위해 비모수통계방법인 교차분석(crosstab)과 카이스퀘어( $\chi^2$ ) 검정을 이용하였다.<sup>36)37)</sup>

##### 4.3.1 〈가설 1〉의 검정: 회계원칙 규정방식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 1〉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참여자의 리스분류의사결정의 판단을 운용리스(피감사기업에 유리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의미)와 금융리스(피감사기업에 불리한,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의미)로 이분화하였다. 즉,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중간값인 6(금융리스로 분류 1-운용리스로 분류 11, 11점 척도)을 기준으로 응답을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여기서 1에서 5의 값을 응답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 성향을 나타내며, 7에서 11의 값을 응답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단, 6의 값을 응답한 실험참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sup>38)</sup>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36) 교차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 m, n개의 범주로 측정된 두 변수로 이루어진 m\*n셀이 갖는 빈도분포에 의해서 이론적인 빈도와 실제빈도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독립성 혹은 관련성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독립성 혹은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카이스퀘어( $\chi^2$ ) 검정이다(Levin and Davis 1998).

37)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 단일변량분산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위험선호태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38) 이러한 분석방법은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성의 측정치로서 응답치를 분류하기 위해 Agoglia et al.(2011)에 의해 이용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감사인이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둘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평균차이분석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표 7〉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hi^2$  검정

			리스분류의사결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계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count %	39 (55.7%)	31 (44.3%)	70 (100.00%)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	count %	46 (68.7%)	21 (31.3%)	67 (100.00%)
계		count%	85 (62.0%)	52 (38.0%)	137 (100.00%)

*Pearson Chi-Square*( $\chi^2$ ) = 2.435 (p(0.083))

주)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중간값인 6을 기준으로 응답을 이분화 함. (즉 1-5를 응답하면 '금융리스'로, 7-11을 응답하면 '운용리스'로 분류.

분석결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비율(즉, 피감사 기업에 유리한 보다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은 회계 처리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중심인 상황 보다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기준인 원칙중심인 상황에서, 감사인들의 의사결정성향이 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더 명확한 상황(규정중심)이 제시될 때 31.3%(N=21)의 실험참여자가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한 반면,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상황(원칙중심)이 제시될 때 44.3%의 실험참여자(N=31)가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적으로 나타나( $\chi^2=2.435$ ,  $p < 0.083$ ), 〈가설 1〉은 채택되었다.<sup>39)</sup>

#### 4.3.2 〈가설 2〉의 검정: 감리가능성

〈가설 2〉인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설 1〉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실험참여자의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응답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이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비율(즉, 피감사기업에 유리한 보다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들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33.3%(N=24)의 실험참여자가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한 반면,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제시될 때 43.1%(N=28)의 실험참여

39) 본 연구와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된 Agoglia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실험설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Agoglia et al.(2011)은 실험에서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는 기준(SFAS No. 13)과 현재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IAS 17)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비상장기업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사한 회계(감사)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제시된 기준에 대해 각국의 실험참여자가 인지 및 판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Agoglia et al.(2011)의 실험참여자는 재무제표작성자(CFO 등)였으나, 본 연구는 실험상황을 감사상황으로 설계하고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이 있는 감사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험결과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표 8〉 감리가능성이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hi^2$  검정

			리스분류의사결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계
감리가능성	높음	count %	48 (66.7%)	24 (33.3%)	72 (100.00%)
	낮음	count %	37 (56.9%)	28 (43.1%)	65 (100.00%)
계		count%	85 (62.0%)	52 (38.0%)	137 (100.00%)

$$\text{Pearson Chi-Square}(\chi^2) = 1.377 \text{ (p<0.159)}$$

주)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중간값인 6을 기준으로 응답을 이분화 함. (즉 1-5를 응답하면 '금융리스'로, 7-11을 응답하면 '운용리스'로 분류.

자가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아( $\chi^2=1.377$ ,  $p < 0.159$ ), 〈가설 2〉는 기각되었다.

#### 4.3.3 기존연구 결과와의 비교

우선 본 연구의 〈가설 1〉과 관련하여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규정중심의 기준에 비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감사인들은 피감사기업에 보다 유리한 방향인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더 공격적인 회계보고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회계기준에서 숫자(경제적 내용연수의 75%)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규정 중심)에 비해 구술적(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원칙중심)에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의 공격적 보고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규정중심 하의 기

준에서 보다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원칙중심의 기준에서 보다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IFRS 도입과 관련된 최근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심리학 연구와는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우선,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한계수준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는 규정중심 기준의 표현상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리스기준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기준에서의 표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명확한 숫자(100분의 75 이상)를 이용한 표현(규정중심)과 불명확한 구술(상당부분)을 이용한 표현(원칙중심)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숫자의 표현은 기댓값이나 기대효용의 계산이 가능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전달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구술을 통한 표현은 애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Wallsten et al.

1993).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칙중심 하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대해 감사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유인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하에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유리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수치 혹은 구술로 제시된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는 심리학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Piercey(2009)의 연구는 또 다른 해석가능성을 제시한다. 심리학 이론에서는 두 방식(수치와 구술로 제시된)에 의한 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고 있으나 판단 및 의사결정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Budescu et al. 2003; Budescu and Wallsten 1995; Huizingh and Vrolijk 1997; Rapoport et al. 1990). 즉 두 방식간의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는 심리학 이론과 실증연구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Piercey(2009)는 이 두 방식 간에 실증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관련 업무(task)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즉 업무가 정확성(accuracy)을 파악하여야 하는 업무는 두 평가방법의 의사결정 결과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다른 목적의 과업, 대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sup>40)</sup>는 두 평가방법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sup>41)</sup> 구체적으로 Piercey(2009)는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서 개개인이 숫자

혹은 구술로 제시된 확률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회계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서 실험참여자 수치로 제시된 경우(본 연구의 규정중심) 보다 구술적인 표현(본 연구의 원칙중심)으로 제시된 경우에, 편향(bias)을 가진 판단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과업은 감사인의 입장에서 특정 목적을 의도하고자 하는 회계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술적인 표현인 원칙중심이 제시된 상황에서 피감사기업에 보다 유리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2>와 관련하여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공격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하에서 감독기관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감사인의 공격적 회계처리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4.4 판단일치정도(consensus)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품질

본 절에서는 본 실험에서 실험참여자의 응답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판단일치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40) 이는 “motivated reasoning task”로 표기되었다.

41) 예를 들면, 정확한 예측을 하여야 하는 과업(accurate assesment)에서는 두 방법 간 차이가 없었으나, 이에 비해 의도적으로 낙관적 예측을 해야 하는 과업(optimistic assesment)에서는 두 방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1 판단일치정도의 의미

회계관련 판단 및 의사결정 연구에서의 의사결정의 품질은 정확성(accuracy) 보다는 한 사람의 판단이 동료나 전문가 집단에 속한 타인과의 판단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주로 고려해 왔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응답을 다른 사람의 응답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판단 및 의사결정의 품질측정치를 일반적으로 '판단일치정도(consensus)'라고 한다(Bonner 2008, p.42). 판단일치정도는 의사결정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한 응답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판단 및 의사결정의 품질을 결정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Ashton(1985)은 회계감사과업을 이용한 회계의사결정 연구에서, 판단일치정도는 판단 및 의사결정의 또 다른 품질차원으로 볼 수 있는 '정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단일치정도를 이용한 측정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틀릴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sup>42)</sup>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회계의사결정 연구, 특히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판단일치정도를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하고 있다.<sup>43)</sup>

#### 4.4.2 본 실험자료의 판단일치정도

본 연구에서도 의사결정의 품질로서, 처리변수 별로 조작된 집단 내의 실험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간 판단일치정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이 집단 내의 판단일치가 반드시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참여자간 응답성향의 차이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간의 판단일치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응답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4)</sup>

우선 응답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그림 3>에서는 각 집단에 속한 실험참여자들이 응답척도 별로 응답한 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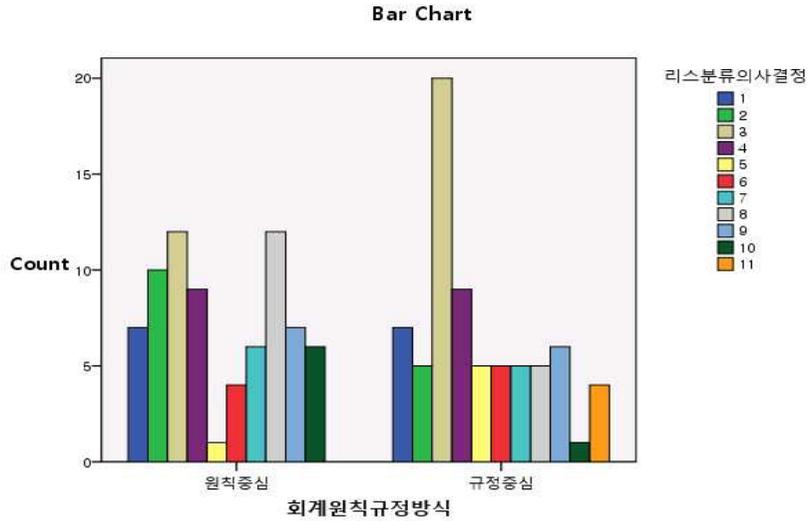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에 따른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차이를 보면(<그림 3>, [패널 A] 참고), 규정중심의 경우에는 리스분류의사결정이 금융리스(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원칙중심에서는 금융리스 혹은 운용리스의 결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감리가능성 별로는(<그림 3>, [패널 B]참고),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리스분류의사결정이 금융리스 혹은 운용리스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높은 경우에는 금융리스(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응답분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상황 하에서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일치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원칙중심의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응답자의 판단일치정도가 낮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림 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42) Einhorn(1974)는 전문가 의사결정자 집단에서 판단일치정도는 정확성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가 집단 내에서 판단일치정도의 결여는 적어도 일부가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강한 판단일치정도가 반드시 정확성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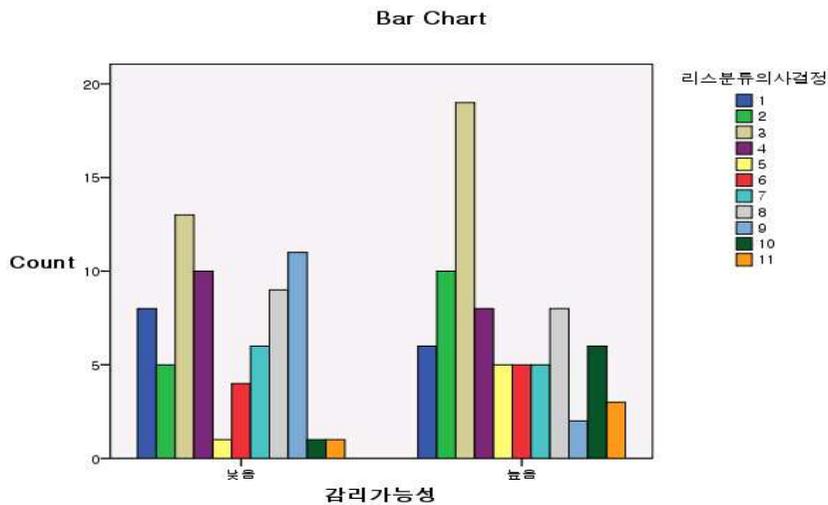
43) Bonner(2008, p.43)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회계감사 분야는 판단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제 결과를 알기가 어렵고, 전문기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44) 표준편차를 통하여 응답의 일치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에 추가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판단일치정도를 해석하였다.

[패널A]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에 따른 리스분류의사결정



[패널B]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에 따른 리스분류의사결정



주) 그래프의 값(count)은 각 집단별 리스분류의사결정의 각 척도에 해당하는 응답수를 이용(1= “금융리스로 처리”(㉠A에 불리)이며, 11= “운용리스로 처리”(㉠A에 유리)).

〈그림 3〉 처리변수별 의사결정성향의 차이(응답척도의 응답수 기준)

## 4.5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 4.5.1 연구결과의 해석: 종합

이상의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상황 하에서 감사인의 의사결정결과는 응답자의 판단일치정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의 <그림 3>에서 제시한 차별적인 응답분포는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일치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각 실험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즉, 표준편차의 값이 높은(낮은) 경우 판단일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하 평균과 표준편차의 통계량은 <표 6>을 참고).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변수를 교차하여 의사결정의 판단일치정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은 전체 집단에서 규정중심 보다 원칙중심에서 공격적 의사결정이 증가되고(평균이 4.88에서 5.26로 증가), 판단의 일치정도는 감소하였다(표준편차가 2.858에서 2.989로 증가).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게다가 의사결정의 판단일치정도가 낮기 때문에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회계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원칙중심 기준하에서는 감리가능성을 높더라도 판단의 일치정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여(표준편차가 2.903에서 3.903로 증가), 원칙중심인 IFRS하에서 감리가능성을 통하여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거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전체집단에서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에서 공격적 의사결정이 감소되나(평

균이 5.22에서 4.94로 감소), 이러한 판단의 일치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표준편차가 2.915에서 2.939로 증가). 이러한 결과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하는 경향을 단순히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만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검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원칙중심 상황에서는 규정중심에 비해 감사인의 공격적 보고성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감사인들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칙중심 기준 하에서는 규정중심 기준에 비하여 감사인간의 판단일치정도는 더욱 감소되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적인 보고성향의 증가나 감사인 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감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감사인 별 판단일치정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즉 표준편차가 증가하여), 이는 결과적으로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감사인 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 강조방안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4.5.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FRS와 같은 원칙중심 기준에서는 종전의 규정중심에 비해 감사인의 공격적 보고성향이 증가하며, 감사인 간의 판단일치정도도 감소될 수 있다. 이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하에서는 동일한 회계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이 피감사법

인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IFRS 하에서는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이 명확한 지침이 없는 IFRS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회계처리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IFRS 하에서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IFRS기준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감리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IFRS와 같은 원칙중심 기준하에서 감사인의 공격적 회계처리성향은 감소되나,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거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독기관은 단순한 감리가능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해서는 재량적인 회계선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 감독과 이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계분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예를 들면 사전감사나 수시감사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감독과 회계법인내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인도 원칙지향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V. 결론

IFRS는 재무적 환경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각 계정과목에 대해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무보고에 필요한 회계원칙 규정방식을 기존의 규정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에 기반하고 있다.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은 특정 회계처리에 대한 적용수준에 대한 설명을, 숫자나 열거된 세부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규정중심) 대신, 사례나 지침에 의한 정의를 통해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하게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IFRS는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권을 확대시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판단과 회계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정중심의 기준과 현재 IFRS가 근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기준의 차이가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규제기관의 감리가능성 확대가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칙중심인 IFRS 하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회계기준 제정기관은 앞으로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IFRS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존 의사결정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실험참여자들 간 판단일치 정도를 검토한 결과, 감사인은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동일한 회계상황을 감사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특히 감리가능성을 높이는 경우에도 이

러한 경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순한 감리가능성의 확대 보다는 실질적인 감리기능의 강화나 회계감사인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회계사례를 이용하여 규정과 원칙중심 하에서 의사결정행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실험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실험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험참여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나, 격리된 공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아 완벽한 환경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실험설계상 감사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감사계약기간 및 시점 등)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험참여자가 연구자가 설계한 실험상황과 동일하게 실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포함한다.<sup>45)</sup>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감사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영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해석이 신중하여야 한다. 추가로 미래연구에서는 변화된 회계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속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속성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속성과 관련된 이론을 밝히고, 개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1) IFRS 재무정보 공시 충실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 정례브리핑 자료. 2011.6.21
- 이재은(2011)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영향 요소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6권 제1호: 125-181.
- 정태범(2008)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감리초치방법의 실효성 검토. **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323-352.
- Agoglia, C. P., T. S. Douplik, and G. T. Tsakumis (2011) "Principles-Based versus Rules-Based Accounting Standards: The Influence of Standard Precision and Audit Committee Strength on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86(3): 747-767
- Bonner, S. (2010)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 Prentice-Hall.
- Bruce, B., B. Michael, and P. Helen (2006) "Rules, principles and judg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Abacus*, 42(2), 189-204.
- Budescu, D. V., & Wallsten, T. S., (1995) "Processing linguistic probabilities: General principles and empirical evidence," In J. Busemeyer, R. Hastie, & D. L. Medin (Eds.), *Decision making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32, 275-318.
- Budescu, D. V., Weinberg, S., & Wallsten, T. S. (1988) "Decisions based on numerically and verbally expressed uncertaint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4, 281-294.

45)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상황에서는 피감사인을 중요한 고객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실험참여자(감사인)가 피감사인이 상장법인 혹은 비상장법인인가에 따라 중요한 고객으로 인지하는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Chen, J. J., and P. Cheng (2007)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harmonization of Chinese accounting practices with IFRS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15(2), 284-293.
- Collier, P., and A. Gregory (1996)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and the audit fee," *European Accounting Review*, 5(2), 177-198.
- Cuccia, A. D., Hackenbrack, K., & Nelson, M. W. (1995) "The ability of professional standards to mitigate aggressive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0(2), 227-248
- Donelson, McInnis, and Richard D. Mergenthaler (2010) Rules-based accounting standards and litigation. working paper.
- Einhorn, H. J. (1974) "Expert judgment: Some necessary conditions and an exam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October), 562-571.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2002) Proposal—principles-based approach to U.S. standard setting. Norwalk, CT: FASB.
- Jamal, K., and H. T. Tan (2010) "Joint effects of principles-based versus rules-based standards and auditor type in constraining financial managers' aggressive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5(4), 1325-1346.
- Kadous, K. and M. Mercer (2011) Jury verdicts against auditors under precise and imprecise accounting standards, Emory University and DePaul University working paper.
- Karelitz, T. M. and D. V. Budescu (2004) "You say "Probable" and I say "likely": Improv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ith verbal probability phrases,"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10(1), 25-41.
- Levin, R. I., and David S. R. (1998) *Statistics for Management*, Seventh Edition, Prective-Hall International.
- Maines, L. A., E. Bartov, P. Fairfield, D. E. Hirst, T. E. Iannaconi, R. Mallett; C. M. Schrand, D. J. Skinner, and L. Vincent (2007) "Spotlight on principles-based financial reporting," *Business Horizons*, 50(5), 359-364.
- Mergenthaler, R. (2009) Principles-based versus rules-based standards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 McGill, G. A. (1990) The CPA's aggressive position recommendation decision: Situational, attitudinal, and personality facto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lorida.
- Moxey, L. M., and Sanford, A. J. (2000) "Communicating quantities: A review of psycholinguistic evidence of how expressions determine perspectiv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4, 237-255.
- Nelson, Mark W., John A. Elliott, and Robin L. Tarpley (2002) "Evidence from Auditors about Managers' and Auditors' Earnings Management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175-202.
- Nelson, M. W., J. A. Elliott, and R. L. Tarpley. (2003) "Behavior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principles- and rules-based standards," *Accounting Horizons*, 17(1), 91-104.
- Olson, M. J., and Budescu, D. V. (1997) "Patterns of preference for numerical and verbal probabilities," *Journal of Experimental Decision Making*, 10, 117-131.
- Peasnell, K. V., P. Pope, and S. Young (2000) "Accrual management to meet earnings targets: UK evidence pre- and post-Cadbury,"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32(4), 415-445.
- Pсарos, J., and K. T. Trotman (2004) "The impact of the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on

- preparers' judgments," *Abacus*, 40(1), 76-93.
- Piercey, M. D. (2009) "Motivated reasoning and verbal vs. numerical probability assessment: Evidence from an accounting contex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 330-341.
- Reckers, P. M. J., D. L. Sanders, and R. W. Wyndelts (1991)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ax practitioner complia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2), 30-46.
- Roberts, M. L. (1998) "Tax accountants' Judgment/Decision-Making research: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1), 78-121.
- Teigen, K. H., and Brun, W. (1995) "Yes, but it is uncertain: Direction and communicative intention of verbal probabilistic terms," *Acta Psychological*, 88, 233-258.
- Teigen, K. H., and Brun, W. (1999), "The directionality of verbal probability expressions: Effects on decisions, predictions, and probabilistic reason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0(2), 155-190.
- Teigen, K. H., and Brun, W. (2000) "Ambiguous probabilities: When does  $p = 0.3$  reflect a possibility, and when does it express a doubt?,"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Making*, 13, 345-362.
- Young, S. M. (1985) "Participative Budgeting: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829-842.
- Schipper, K. (2003) "Principles-Based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Horizons*, 17(1), 61-72.
-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2003) Study Pursuant to Section 108(d)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n the Adoption by the United States Financial Reporting System of a Principles-Based Accounting System.
- Wallsten, T. S., D. V. Budescu, and R. Zwick (1993) "Comparing the calibration and coherence of numerical and verbal probability judgments," *Management Science*, 39(2), 176-190
- Wallsten, T. S. (1990) "The costs and benefits of vague information," In R. M. Hogarth, (Ed.), *Insights in decision making: A tribute to the Hillel J. Einhorn* (pp. 28-43).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immer, A. C. (1983) "Verbal vs. numerical processing of subjective probabilities,". In R. W. Scholtz (Ed.),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msterdam: Elsevier.
- Zimmer, A. C. (1984) "A model for the interpretation of verbal predi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 Machine Studies*, 20, 121-134.

## 〈부록〉 실험 설문지<sup>1)</sup>

### I. 실험집단 G11(규정방식: 원칙중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감리가능성: 높음)

※ 이제부터 가상 사례가 제시됩니다.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이 실제 사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응답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사례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제 (주)A의 감사상황이 귀하께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상황은 모두 가상 상황이며, 제시된 정보 이외의 상황이나 정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시되는 내용만을 고려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ction 1〉 리스자산의 분류기준

(주)A는 상장법인으로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며, 현재 (주)A에서 문제가 된 리스와 관련된 K-IFRS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리스(finance lease) 분류기준: K-IFRS 제1017호 문단10

10.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1) - (2) 생략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 (5) 생략

※ 위 (3)과 (4)의 “상당부분”과 “상당하는”에 대한 실무지침은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분류기준 (생략)

1)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는 실제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 부분만을 첨부하였다.

**<Section2> 기계장치의 취득(리스계약) 및 기타 상황**

※ 귀하는 가상기업 (주)A의 회계감사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주)A는 당기에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리스자산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장치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이며, 동 리스계약은 5년 동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리스계약에는 해당자산의 최초의 해지불능기간 말(5년도 말)에, 일정 비율로 월별 리스료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option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추가로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총 리스기간은 8년(내용연수 10년)이 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5년 후 리스계약을 갱신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외의 다른 조건은 금융리스분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 1) (주)A의 재무상황**

(1) 위의 리스자산을 운용리스 혹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주)A의 당기 말(리스계약이 속한 첫째)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	268,430,807 원	-88,658,694 원
EPS	14.78 원	-4.88 원
ROA	0.21%	-0.07%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88.44%	92.34%

즉, (주)A는 해당 리스자산을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적자보고(당기순손실)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익관련 재무비율이 하향 조정되며,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주)A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으며, 향후 5년간 이 차입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재무비율이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압력이 예상됩니다.

(3) 귀하는 (주)A를 포함하여 관련회사 총5개 회사를 감사하고 있기에 (주)A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추가정보 2) 감사보고서 감리가능성**

최근 금융감독원은 K-IFRS 도입 후, 추후 2~3년 동안 K-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일제 점검하는 등 품질관리감리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년 간 (주)A에 감리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최근 (주)A와 유사 업종의 기업에서 분식회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주)A는 감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감리대상 선정시 리스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최근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 II. 실험집단 G22(규정방식: 규정중심(일반기업회계기준), 감리가능성: 낮음)<sup>2)</sup>

### 〈Section 1〉 리스자산의 분류기준

㈜A는 비상장법인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으로, 현재 ㈜A에서 문제가 된 리스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리스(finance lease) 분류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3.6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1) - (2) (생략)
  -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4) - (5) (생략)

※ 위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 문단 13.6(3)의 경우에 해당한다”(실무지침13.6)과 (4)와 관련하여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제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100분의 90 이상이면 문단 13.6(4)의 경우에 해당한다.”(실무지침13.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분류기준 (생략)

### (추가정보 2) 감사보고서 감리가능성

㈜A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큰 지적사항이 없었기에, ㈜A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추가정보 3) 피감사기업(고객)의 요구

(동일) 그러나 위의 리스자산에 대하여 ㈜A의 회계담당자는 리스구분기준 중 리스기간과 관련하여 리스계약을 5년 말에 갱신할 경우 리스기간이 총 8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의 75%를 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갱신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기간은 5년이므로 경제적 내용연수의 75%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바, 회사담당자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이를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의 리스가 금융리스로 처리되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다면, ㈜A는 “귀하와의 차년도 이후의 감사계약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 앞에 제시한 G11과 다른 내용만을 제시하며, 설문지의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다.

## Effects of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 Review Probability on Auditors' Lease Judgment

Tae-Sup Shim\* · Su-Jin Pae\*\*

### Abstract

With the recent adoption of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Korea, the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has been changed from a rule-based standard to a principle-based standard. Rule-based standards typically provide very detailed guidelines and bright line tests by using numerically expressed rules in determining the correct accounting treatments for a transaction or event. In contrast, principle-based standards are documents of broad principle, which rely on the professional judgement of the users of the standards. In principle-based standards, most principles are expressed verbally with few rule and guidelines for specific accounting treatment. According to psychology research, the verbally expressed standards (principle-based) are perceived less precise than the numerical stated standards (rules-based). By providing broad principle, principle-based standards allow users to do discretionary accounting treatment within the principles. Principle-based approach, therefore, makes it possible for a manager to choose the accounting treatment suited for their corporate circumstances. However,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expanding a manager's tendency to make an opportunistic choice when deciding accounting treatment or to spread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Also, preparers or auditors may treat the same accounting transactions differently,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rules in a principle-based standard.

The previous research have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types of accounting standards on preparers' financial reporting judgments. Many studies reported that principle-based standards mitigate aggressive reporting decision, but the opposite results are also reported. In Korea, a principle-based standard, Korean-IF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1, so the impacts of

---

\*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 Full-time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ch standard-type changes need to be stud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on the judgments of auditors in lease classific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udit review probability on auditors' decision, because under a principle-based standard it is needed to reduce auditors aggressive reporting by the audit review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ypes of accounting standards (principle-based vs. rule-based) and audit review probability (high vs. low) on auditors'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In Korea, there are two kinds of accounting standards: (1) Korean-IFRS is for mainly publicly listed companies and (2) Korean-GAAP for unlisted companies. In lease classification provision, Korean-IFRS accepted principle-based approach like IFRS (major part of the economic life of the asset). However, Korean-GAAP is a rule-based standard (75% or more of the estimated economic life of the leased asset). In this study, Korean-IFRS is regarded as a principle-based standard, and Korean-GAAP is considered as a rule-based standard.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and collected the data by a questionnaire. Two treatment variables ((1)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principle-based vs. rules-based), (2) Audit review probability (high vs. low)) were manipulated as between-subject. Accordingly this experiment is designed with 4 groups.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as auditors'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by 11-point scale. The subjects are auditors presently working at Big 4 accounting firms in Korea, and having at least three years' experience as auditors.

The procedure of the experiment consists of 3 steps. In the first step, subjects responded the questions related to demographics and risk preferences. Next second step, the questionnaires provided a fictitious audit situation related to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capital lease or operating lease). The subjects were assumed as auditors of hypothetical company. And they were provided guidelines for classifying a lease, information about acquisition of a leased asset, and other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hypothetical company. Additionally they were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impacts of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s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After considering the case information, subjects responded their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In final step, subject completed questions for manipulation check.

The analysis of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ubjects in a principle-based standard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take aggressive position in classifying the leases than those under a rule-based standard. Second, under a higher audit review probability, subjects are more likely to decide aggressively, but this resul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onsensus of the classification decision, under a principle-based standard, the

tendency of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 for same accounting transactions increases. Also, this tendency does not decrease by increasing audit review probability.

The results above suggest th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to include an additional standard within IFRS (including Korean-IFRS) to mitigate the aggressive financial decision of auditors or preparers. Also, by providing more detailed rule in current IFRS or by continuously educating auditors, the tendency for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s for same transactions can be decreased.

Key words: IFRS, K-IFRS, Principles-based, Rules-based, Audit review probability, Judgment and decision making